

일본의 입탕세(入湯稅)에 대하여

박 군 조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현행 일본의 지방세 중 “入”字가 들어있는 세목으로는 입렵세(入獵稅)와 입탕세(入湯稅)의 2종을 들 수 있다. 두 세목은 공히 목적세로서 입렵세는 “수렵자의 등록”에 대해 과해지며, 입탕세는 “광천수욕장에서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과해지는 세금이다.

입탕세는 물의 사용에 따른 과세로서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세 중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에 과세하는 목욕용수”와 그 성격은 비슷하나 채수자에게 과세하느냐 물의 사용자에게 과세하느냐의 차이점으로 양세는 다르며 목적세라는 점은 공통한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입탕세에 대하여 그 운용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와의 차이점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에는 온천이 많기도 하지만 일본인들은 주 5일제에 따른 주말을 온천에서 보내며 향토음식을 먹고, 휴식을 즐기는 등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점도 온천의 입장에 따른 과세가 용인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일본의 지방재무협회 발간 「地方稅 (2003.12월호 : 입탕세의 개요와 그 사용상황에 대하여, 總務省 市町村稅課 久字索德)」을 참고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1. 시작하는 말

입탕세는 광천욕장 소재의 시정촌이 환경위생시설, 鑛泉原의 보호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기타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및 관광진흥(관광시설의 정비를 포함)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광천욕장에서의 입탕행위에 대하여 입탕객에게 과하는 것이다.

목적세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사업 또는 시설과 과세객체와의 사이에 무언가의 수익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는 것으로 목적세의 실정이 과세단체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 많은 것(지방세법 제5조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입탕세에 있

어서는 「광천욕장 소재의 시정촌은 목적세로서 입탕세를 과하는 것으로 한다.」(지방세법 제5조 제4항)로 규정되어 필히 과해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입탕세에 대해서는 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정촌 및 각 도도부현 담당자의 협력을 얻어 입탕세의 세율 채용상황 및 용도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있지만, 平成 14년(2002년)도의 결과를 기초로 입탕세의 개요와 그 용도상황에 약간의 설명을 가하는 것으로 한다.

역시 본문 중 의견이 있는 부분은 사건임을 양해 구하고자 한다.

II. 과세단체

2002년도에 있어 입탕세의 과세단체는

1,333단체로 전년도의 1,286단체 보다도 47단체가 증가하고 있고 이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단체의 도도부현별 분포를 보면, 北海道가 127단체로 가장 많고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長野縣의 91단체(전체의 6.8%), 新潟縣의 71단체(同 5.3%), 秋田縣, 福島縣의 55단체(同 4.1%)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 상황은 <표 1> 과 같다.

또한, 전 단체에 대한 과세단체의 비율은 山形縣이 9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秋田縣(同 79.7%), 長野縣(同 75.8%), 富山縣(同 74.3%), 山梨縣(同 68.3%)의 순으로 되어 있고 沖繩縣(同 5.8%), 高知縣(同 11.3%), 愛媛縣(同 11.4%), 埼玉縣(同 12.2%), 奈良縣(同 12.2%)이 적게 되어 있다.

<표 1> 도도부현별 세율 등 과세상황 (2002년도)

구 분	과 세 단 체 수				세율(엔)		수입액 (백만엔)
	시	정	촌	계	최고	최저	
北海道	21	93	13	127	150	20	2,649
青 森	4	17	9	30	150	100	250
岩 手	9	14	4	27	150	35	650
宮 城	4	18	1	23	150	70	592
秋 田	9	38	8	55	150	100	843
山 形	13	25	4	42	150	75	771
福 島	7	31	17	55	150	150	1,000
茨 城	7	10	6	23	150	100	422
栃 木	8	15	2	25	150	80	1,035
群 馬	7	15	16	38	150	150	868

〈표 1〉 도도부현별 세율 등 과세상황 (2002년도)(계속)

구 분	과 세 단 체 수				세율(엔)		수입액 (백만엔)
	시	정	촌	계	최고	최저	
埼 玉	1	7	3	11	150	150	25
千 葉	9	6	0	15	150	150	176
東 京	13	3	1	17	150	150	135
神奈川	4	5	0	9	150	100	968
新 潟	13	37	21	71	150	50	1,126
富 山	7	13	6	26	150	150	366
石 川	8	12	6	26	150	150	691
福 井	6	10	4	20	150	100	464
山 梨	7	22	14	43	150	150	743
長 野	17	29	45	91	150	50	1,466
岐 阜	8	15	20	43	150	40	879
靜 岡	11	21	1	33	150	70	1,884
愛 知	4	9	2	15	150	150	295
三 重	7	16	2	25	210	50	454
滋 賀	4	9	1	14	150	75	233
京 都	3	5	1	9	150	120	111
大 阪	10	2	0	12	150	100	61
兵 庫	10	22	0	32	150	100	672
奈 良	1	2	4	7	150	50	50
和歌山	3	15	5	23	150	150	505
鳥 取	2	10	1	13	150	150	216
島 根	6	20	5	31	150	150	278
岡 山	5	14	4	23	200	100	258
廣 島	7	22	2	31	150	20	265
山 口	11	14	0	25	150	150	212
德 島	1	8	1	10	150	80	73
香 川	2	8	0	10	150	50	140

〈표 1〉 도도부현별 세율 등 과세상황 (2002년도)(계속)

구 분	과 세 단 체 수				세율(엔)		수입액 (백만엔)
	시	정	촌	계	최고	최저	
愛 媛	3	4	1	8	150	150	174
高 知	3	2	1	6	150	150	53
福 岡	12	12	4	28	150	50	248
佐 賀	4	9	2	15	150	100	206
長 崎	5	19	1	25	150	20	250
熊 本	9	26	9	44	150	150	772
大 分	6	10	1	17	150	40	581
宮 崎	8	13	3	24	150	100	307
鹿兒島	9	23	1	33	150	80	343
沖 繩	2	1	0	3	150	150	40
合 計	330	751	252	1,333	210	20	24,797

※ 「과세단체수」는 2002년도중에 입탕세의 수입액이 있었던 단체임. 東京都 特別區는 「市」란에 계상함

〈표 2〉 입탕세 세율등의 개정경과

구분	1950	1953	1957	1971	1975	1977	1990
세율	10엔	20엔	-	40엔	100엔	150엔	-
용도	-	-	환경위생시설 · 관광시설의 정비에 필요 한 경비	소방시설, 기타 소방활동에 필 요한 시설의 정비에 요하는 비용을 추가	-	광천원의 보호 관리시설의 정 비에 요하는 비용을 추가	관광의 진흥에 요하는 비용을 추가
비고	현행 지방세 법의 제정에 의해 법정보 통세로 됨	-	지 방 세 법 의 개정에 의해 목적세로 됨	-	-	-	-

III. 세율의 채용상황에 대하여

입탕세의 과세표준은 昭和 46年度(1971년

도)에 20엔에서 40엔으로, 昭和 50年度(1975
년도)에 100엔으로, 그리고 1977년도에 150
엔으로 인상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만

〈표 3〉 입탕세의 세율채용 상황

세 율 (엔)	20	35	40	50	60	70	75	80	100	120	130	140	150	200	210
단체수	5	1	3	11	1	4	3	5	81	4	8	4	1,201	1	1
구성비 (%)	0.4	0.1	0.2	0.8	0.1	0.3	0.2	0.4	6.1	0.3	0.6	0.3	90.1	0.1	0.1

(〈표 2〉 참조) 여기에 의하지 않는 세율을 채용하는 단체도 있다.

2002년도에 있어 세율 채용상황은 구체적으로는 〈표 3〉과 같지만, 1977년도부터 표준세율로 되어 있는 150엔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단체가 1,201단체(과세단체 중 90.1%), 150엔 미만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단체가 130단체(同 9.7%), 150엔을 초과하는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단체가 2단체(同 0.2%)로 되어 있다.

역시, 세율의 최고는 210엔, 최저는 20엔으로 되어 있다.

〈표 4〉 입탕세 수입액이 많은 시정촌 (2001년도)

(단위 : 백만엔, %)

순위	도도부현명	시정촌명	2001년도			온 천 명
			입 탕 세 수입액 A	시정촌세 수입액 B	구 성 비 A / B	
1	神奈川県	箱根町	715	7,415	9.6	箱根
2	静岡県	熱海市	452	12,108	3.7	熱海
3	北海道	禮幌市	383	268,836	0.1	定山溪
4	栃木縣	藤原町	361	2,979	12.1	鬼怒川
5	静岡県	伊東市	332	13,415	2.5	伊東
6	大分縣	別府市	296	14,518	2.0	別府
7	宮城縣	仙台市	251	181,938	0.1	秋保
8	北海道	函館市	233	32,142	0.7	湯川
9	北海道	登別市	232	5,318	4.4	登別
10	石川縣	加賀市	222	9,164	2.4	片山律

※ 1. 「시정촌세징수실적조사」에 의함.

2. 시정촌세에는 국민건강보험세를 포함하지 않음.

Ⅳ. 입탕세 수입액의 상황에 대하여

2002년도에 있어 입탕세 수입액은 24,797백만엔이고, 전년과 비교하여 730백만엔이 증가하였다. 또한, 시정촌세 수입액에 차지하는 입탕세수의 비율(2001년도)은 0.12%에 불과하지만, 개개의 과세단체에 대해서 보면 입탕세는 중요한 재원으로 되어 있다.

입탕세 수입액이 많은 시정촌 및 시정촌세 수입액에 차지하는 입탕세수입액의 비율이 높은 시정촌(2001년도)은 <표 4> 및 <표 5> 와 같다.

Ⅴ. 용도(충당)상황에 대해

입탕세는 목적세로서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환경위생시설, 광천원의 보호관리시설, 소방시설 기타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및 관광의 진흥(관광시설의 정비를 포함)에 요하는 비용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충당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각 시정촌의 실태에 따라 적의하게 각각의 시설정비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입탕세 용도(충

<표 5> 시정촌세 수입액에 차지하는 입탕세 수입액의 비율이 높은 시정촌 (2001년도)

(단위 : 백만엔, %)

순위	도도부현명	시정촌명	2001년도			온 천 명
			입 탕 세 수입액 A	시정촌세 수입액 B	구 성 비 A / B	
1	山梨縣	丹波山村	21	74	27.8	노메코이
2	北海道	大瀧村	65	236	27.4	北湯澤
3	北海道	上川町	128	750	17.0	層雲峽
4	群馬縣	伊香保町	199	1,189	16.8	伊香保
5	熊本縣	南小國町	64	435	14.7	南小國郷
6	兵庫縣	城崎町	107	733	14.6	城崎
7	北海道	阿寒町	133	911	14.5	阿寒湖畔
8	岡山縣	西栗倉村	11	78	14.3	아와꾸라
9	山梨縣	小菅村	12	88	13.9	小菅
10	山梨縣	芦安村	8	65	12.9	芦安

※ 1. 「시정촌세징수실적조사」에 의함.

2. 시정촌세에는 국민건강보험세를 포함하지 않음.

〈표 6〉 입탕세의 용도(충당)상황

(단위 : 백만엔, %)

구 분		2002년도(A)		2001년도(B)		(A) - (B) (C)
과세시정촌수		1,333단체		1,286단체		47단체
입장세수입액		24,797	구성비	24,068	구성비	729
충 당 상 황	환경위생시설	6,826	27.5	6,609	27.5	217
	광천원의 보호관리시설	1,095	4.4	1,075	4.5	20
	소방시설등	3,309	13.4	3,070	12.7	239
	관광의 진흥	8,674	35.0	8,413	34.9	261
	관광시설정비	4,522	18.2	4,543	18.9	-21
	대상사업관계기금적립	371	1.5	358	1.5	13

당) 상황은 〈표 6〉과 같으며, 2002년도는 거의 전년과 똑같은 비율로 되어 있다.

(1) 환경위생시설

환경위생시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지지만 그 총당액은 6,826백만엔(구성비 27.5%)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729백만엔(3.3%)의 증가로 되어 있다.

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7호) 제8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② 변소를 수세식으로 하여 분뇨 등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의 공동정화조

③ 캠핑장, 스키장, 휴게소, 전망대 등 다수의 이용자가 집합하는 관광지의 환경정화를 꾀하기 위한 공중변소, 공중쓰레기 용기

④ ①이외에 지역마다의 쓰레기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동쓰레기 소각로, 기타의

간이쓰레기 소각로

⑤ 국민의 쾌적한 레크리에이션용의 말(馬)을 확보하기 위한 모기, 파리 등의 구제대책으로서의 구제용 기구

⑥ 간이수도 및 상수도

⑦ 하수도의 종말처리시설

⑧ 배수의 안전화에 의해 생활환경의 정화를 꾀하기 위한 구거

⑨ 시료 및 진개운반용의 기계화 용구

(2) 광천원의 보호관리시설

광천원의 보호관리시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지지만 그 총당액은 1,095백만엔(구성비 4.4%)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0백만엔(1.9%)의 증가로 되어 있다.

① 광천원 함양 및 광천원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 사방언제(堰堤)시설
- 치수시설

- 광천정 보호시설
 - ② 광천 집중관리를 위한 시설
 - 온천양탕시설(광천정, 양탕 펌프, 천질(泉質)처리장치)
 - 집탕시설(수탕조, 배탕펌프, 배탕관망, 분창류말장치, 가온장치)
 - 억제시설(제어장치, 감시장치 및 이들을 설치하는 관리동, 계측기기)
- 역시, 광천부존량의 조사, 적정양탕량의 조사, 이용시설 필요사용량의 조사 등 광천집중관리의 실시에 관한 조사를 포함한다.

(3) 소방시설 기타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소방시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지지만 그 총당액은 3,309백만엔(구성비 13.4%)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239백만엔(7.9%)의 증가로 되어 있다.

① 소방시설

○ 소방용자동차

소방펌프자동차(水槽가 붙은 것을 포함, 화학펌프소방자동차, 사다리붙은소방펌프자동차(굴절사다리를 포함), 소형동력펌프, 고발포차(배연차), 구조공작차, 구급자동차, 기타 소방용자동차

- 소방정
- 소방전용전화장치, 구급지령장치, 기타 화재통보장치
- 소방수리
 - 방화水槽, 소방전
- 소방청사(용지를 포함)
 - 소방청사, 차고, 대기숙사, 기타 소방용 건물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 소방용 차량 진입로
- 소방용 수리 진입로

(4) 관광의 진흥

관광의 진흥에 요하는 비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지지만 그 총당액은 8,674백만엔(구성비 35.0%)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61백만엔(3.1%)의 증가로 되어 있다.

① 관광선전사업

○ 홍보에 관한 비용

- 관광포스터, 팸플렛, 지도 등의 작성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관광선전

○ 기획전에 관한 비용

- 관광전시회, 유치객을 위한 각종 기획전, 캠페인의 개최비용

○ 진흥장려에 관한 비용

- 관광진흥협회 등이 행하는 관광선전사업에 대한 보조

② 관광조사사업

- 관광자원의 정비에 요하는 비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지만 그 총당액은 4,522백만엔(구성비 18.2%)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1백만엔(0.5%)의 감소로 되어 있다.

① 국민숙사, 캠프장 등의 숙박시설

② 공동욕장, 온천 등의 입탕 및 음천시설

③ 온천요양소, 온천연구소 및 온천박물관

④ 종합운동장, 테니스코트, 배구장, 수영장, 스키장 및 스케이트장 등의 운동시설

⑤ 휴게소, 전망대, 유·보도, 기타 유원지

시설

⑥ 교량,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⑦ ①~⑥ 이외에 온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정을 받은 온천지에 있어서는 환경대신이 정한 온천계획의 실시를 위한 필요 시설

VI. 입탕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해

지방세법에는 입탕세의 비과세의 범위나 과세표준의 특례에 관한 특단의 정함은 없다.

그러면서도, 입탕세 과세의 근거는 광천욕탕의 입탕행위에 대하여 통상 그기에 부수하여 여관에의 숙박, 음식, 유흥 등의 행위가 행해지고, 사치적 지출이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것에서 그기에 담세력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치성을 수반하지 않는 광천욕탕의 입탕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의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행할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지만(지방세법 제6조), 일반적으로 과세면제(또는 불균일 과세)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입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연령 12세 미만자의 입욕
- ② 공동욕탕 또는 일반공중욕탕에의 입탕
- ③ 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벽지의 간소한 온천여관에 있어 장기투숙객 등의 입욕
- ④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해 시

정촌 등이 오로지 인근의 주민에게 사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의 입탕

⑤ 자취용의 간소한 시설, 오로지 하루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기타 이들에 유사한 시설로 그 이용요금이 일반의 광천욕탕에의 통상요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정해져 있는 것의 입탕

⑥ 학교교육상의 건지에서 행해지는 행사에의 경우에 있어 입탕

과세단체가 과세면제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은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의해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되고, 「공익상의 사유」라는 것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 직접공익(넓은 의미로 일반의 이익)을 증진하고, 또는 과세하는 것이 직접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또한 「기타의 사유」라는 것은 공익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의 입탕행위에 대해 과세면제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광천욕탕 소재 시정촌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발판으로 각 시정촌의 실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적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역시, 실제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의 상황에 대해서는 과세면제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2002년도 1,122단체, 2001년도 1,083단체), 약 35%의 시정촌에서 불균일 과세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2002년도 467단체, 2001년도 437단체).

또한, 최근의 입탕객수(입탕세의 과세대상

자에 한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7〉참조).

〈표 7〉 입탕객수의 추이

(단위 : 천인)

년 도	입탕객수	지 수
1993	144,474	100
1994	150,532	104
1995	156,569	108
1996	165,182	114
1997	170,622	118
1998	176,069	122
1999	180,934	125
2000	182,491	126
2001	190,468	132
2002	197,395	138

※ 각 연도별 「시정촌세 과세상황 등의 조사」에 의함, 2002.

한편, 실효세율은 1988년도의 138엔을 피크로 감소경향에 있으며, 2002년도에 있어서는 127엔으로 되어 있다. 이 점에서도 광천욕탕 소재의 시정촌에서 불균일 과세의 대상으로 되는 입탕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cdot \text{실효세율} = \frac{\text{조정세액(현년과세분)}}{\text{입탕객수}}$$

VII. 맺는 말

2002년도에 있어 입탕세의 세율, 용도상황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대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입탕세는 사회·관광기반정비나 관광진흥 등 보다 매력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광천욕탕 소재 시정촌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된다. ☺

